

〈서 면 질 의〉

○ 이준영 위원

- 세정과 -

세무조사의 오·남용, 시장경제 위축우려!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기준 설정해야!

은닉·탈루세원을 조기에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아래 '99년 16,592건, 2000년도 9월말 현재 6,318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885억 9,900만원과 555억 2,500만원의 세무조사 실적을 올려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지나친 오·남용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조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탈루세원을 엄격히 차단해 세금을 추정함으로써 조세형평을 달성하고 재원을 확충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 1)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세액 중 실제 납부세액과 미수액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결손액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지방화시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

구매의 투명성 확보,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지양되어야!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가 33.3%, 조

달에 의한 구매가 39.6%, 27.1%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수의계약이 40.0%, 조달구매가 30.0%, 경쟁입찰이 30.0%의 구매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 1)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의 구매는 시급성을 요하고 구매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 이상으로 활용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 차원에서 수의계약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물품구매에 대한 운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2)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별 내역별 유형별 수의계약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비상대책과 -

민방위대 운영비 전년대비 38% 증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민방위대 편성관련 2000년도 운영예산 9억 2,735만 9,000원 중 교육비 70.9%, 장비구입비 10.6%, 운영비 1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00년도에는 총 8,632만 8,000원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이 중 교육비는 4,442만 3,000원, 장비구입비는 8,916만 5,000원이 각각 감소했으나 운영비의 경우는 오히려 4,72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질의 1)

6·15공동선언 이후 안보개념이 변화하고 있지만 통일이상 가는 안보는 없을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지만 약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교육내용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민방위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사회가 다변화되고 기후의 변화로 인해 해마다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전체 예산 중 교육비와 장비구입비는 감소했으나 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와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 면 답 변 서>

○ 허 정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지방세 체납액 발생사유 및 최소화 대책

○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및 체납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시책과 실적 주요 체납원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0년 9월말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384억원으로 이중 12.5%인 802억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이 총 5,137억원이며 이중 도세가 1,935억원(37.6%), 시군세가 3,202억원(62.4%)임.

-세목별로는 취 득 세 1,512억원(29.4%), 주민세 1,289(25.0%),
자동차세 1,125억원(21.8%), 종토세 467억원(9.0%),
재 산 세 288억원(5.6%) 순임

○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 경기회복 부진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납세실적이 부진하고 세무서로부터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지연통보로 과세시기를 일실하여 체납이 누증되거나 사실상 폐차·양도 등 미소유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부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분기 1회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습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지속추진
- 1천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 사실상 폐차·말소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특별지원 등을 실시하였음

○ 체납세 정리를 위한 채권확보 실적으로는

-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1,603천건 951,644백만원
- 예금 등 기타압류 79천건 148,181백만원
- 형사고발 1,702명 24,569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36,380명 335,345백만원 등 총 14,597억원의 채권을 확

보(체납액의 284%) 하였으며

- 체납액 정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광명시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1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 앞으로 체납세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 2001년을 “체납액 최소화 강력실천의 해”로 정하여 세목별로 체납세 징수 도우미제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기간 변경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 시·군간의 경쟁심리 유발 시책을 지속추진
- 체납액 정리실적 부진 시·군에 대하여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경각심을 고취
- 분기 1회이상 체납액 정리기간을 선정 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및 부분업무 협약체결을 금년 중에 체결하여 시·군의 업무를 경감하는 등
- 2000. 11. 1 ~ 2001. 3. 20까지 단계별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전개하여
- 사실상 멸실, 미소유차량에 대한 고질체납액 지속정리 등 체납액방지 및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지방세 징수전망 및 세수추계방법

- 지방세 징수실적이 2000년 10월말 현재 추정목표액 4조 7백 8십억원 대비 88.6%인 3조 6천 1백 19억원이 징수되었는바, 만일 초과징수된다면 세수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와 초과세입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0. 10월말 현재 우리도 전체 세입징수액은 3조6천19억원으로서 이는 목표대비 88.6%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도세가 2조 5억원(55.3%), 시·군세가 1조 6천 1백 13억원(44.7%)원임.
- 최근 5년간 도세 징수목표달성 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 '95. 11. 27. '96년 12. 7, '97. 12. 12, '99. 12. 26일에 달성하였으나 '98년도의 경우

IMF로 인하여 12. 31일 목표액을 징수하였음.

- 2000년도의 경우 아파트분양 및 자동차등록이 증가하였고 남북화해무드에 의한 북부지역토지거래 활성화, 골프장 개장 등으로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 세수목표추계는 당해연도의 특정시점에서 구한 세수실적과 전년동기 대비 세수실적을 대비하여 징수 전망을 한 다음, ±예상 경제성장률, ±과표인상율, ±지역특수요인 등을 반영하는 진도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도세의 80.4%가 부동산 거래 등 유통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과세물건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통계를 하고 있어 정확한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 정확한 세입추계 모델개발을 경기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등에 연구과제로 추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징수실적에 근접한 세입추계를 하기 위하여 각종경제지표, 대단위 개발사업 등 세수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 시·군에서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세수착오에 대한 문제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징수목표 달성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11
목표액	7,619	8,320	11,500	15,209	17,559	19,808	17,150	20,145	21,748
징수액	8,206	11,681	14,763	18,309	19,786	21,396	17,695	21,613	20,824
실 적	107.7	140.4	128.4	120.4	112.7	108.0	103.2	107.3	95.7
목표달성일 (금고불입기준)	12.13	11.5	11.7	11.27	12.7	12.12	12.31	12.26	

- 금년도 추경시 세입부분 반영내역은 1회 추경시 1,500억원, 2회 추경시 2,093억원으로 2000. 3. 20 도세감면폐지조례 규정에 따라 증수 예상액과 저회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마장 장외 발매소 추가설치, 경마장 입장인원증가, IMF 이후 부도업체의 공사 재개에 따른 공동주택준공 및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질 의)

취득세 토지과표와 토지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과표조정 절차

- 취득세 토지과표와 토지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과표조정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취득세에 대한 토지과표 결정은 취득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지침을 매년 행자부장관이 시달하고 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지침(기준)에 의거 당해연도 취득세과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어 과표결정 과정에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과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도의 2000년도 취·등록세 과표 적용비율은 공시지가의 90%이며 건물의 기준과표는 m²당 165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토지이외의 건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건축물,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과세대상에 대한 과표결정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되어 있어 시장·군수가 과표결정(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면 도지사는 과표결정(안)을 도(道)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협의·승인하게 되고, 시장·군수는 승인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열람토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 및 시·군에서는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에 앞서 지방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과표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과표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허 정, 진종설, 김영근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차량관리 개선 대책

- 도본청 및 산하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차량 186대 중 최근 1년간 운행일수가 100일 미만 차량이 64대이며 그 중에서도 30일 미만 차량이 22대에 이르고 있어 차량관리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관용차량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 본청 및 산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186대(승용 81, 승합 66, 화물 53, 특수 16)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본부 화물2대(7로 9508, 80마1238), 산림환경연구원 화물3대(8구 2370, 5르 6655, 88구 2621)관용차량은 IMF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차량대비 운전원이 부족하여 운행되지 못하는 차량이며
- 연간 사용빈도가 100일 미만 운행된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구연수 초과 및 노후된 차량을 매각하는 등 꼭 필요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적정수준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며
- 아울러 차량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도에서는 '99년부터 유류비 절감차원에서 LPG연료 사용이 가능한 휘발유차량 10대를 개조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차 및 소형차 위주로 대체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필요기관에 관리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관용차량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 차량수리비 절감을 위하여 자체예방정비 강화와 자동차 A/S센터의 점검을 확대하여 수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량별 수리비, 보험료 내역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허 정, 한동진, 이준영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방위교육을 통일과 재난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운영상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은 대결과 갈등의 지난 반세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대북인식과 통일안보관이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도에서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인식의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대북관, 통일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지난 9월부터 민방위교육을 주관하는 시·군에 통일부에서 제작한 통일안보표준교재안과
 -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제작한 통일·안보 VTR교재를 배부하는 등
- 민방위대원들의 올바른 대북관, 통일관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는 대형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도민의 안전욕구도 증대되고 있어 민방위 교육도 재난시 실제활용할 수 있는 집중호우시 대처요령, 인명구조요령, 방재훈련 등 재난예방과 수습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동진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0. 11. 29)

(질 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 결정이 많은 이유와 운영상의 문제점

-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123건이 접수되어 25.2%인 31건이 채택되고 87건이 불채택되었는데 불채택 건수가 많은 이유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 부과 이후의 사후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는 달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의 반려 등에 대하여 과세 및 반려 사유가 적법한지를 심사케 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현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서 이의신청 처리기간인 60일보다 훨씬 빨라 신속한 구제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합법적으로 한 번의 구제기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도 의례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불채택 건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는 반드시 구제하고 지방세법 등이 애매 모호하여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고
둘째, 청구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하기에는 처리기간이 짧기 때문에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한 예가 금년도 10월말 현재 57%에 이르고 있는 바, 우리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리기간을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리기간과 동일한 30일로 연장해야 함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였고 우리도의 건의가 반영되어 내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리기한이 30일 연장됨이 입법예고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18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41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질 의)

공유재산 대부

- 잡종재산은 최대한 수익증대에 기여해야 하나 연도별 24%내외의 재산만이 대부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업무소홀에 기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 미대부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입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부면적의 확대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잡종재산의 관리는 장래 행정목적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보다는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대상자를 적극 물색하여 최대한 대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부가 되지 않는 재산은 대부분이 원형대로 보존관리해야 할 임야나 제방 등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와 안양석산부지 등과 같이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키 위해 대부를 억제하고 있는 재산 등이나,
-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 대부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토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동진, 한영남, 김용운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시설 확충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

- 우리도의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210개소, 공공지정시설 207개소 민간지정시설 540개소 등 총 956개소가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 시설 가운데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시설은 전체시설의 77.8%인 743개소이며, 나머지 213개소는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화·산업화로 시설주변의 환경이 점진적으로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시설 주변환경 정비, 정기적 수질검사, 관정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 개방을 폐쇄하고, 물퍼내기, 수중관 교체관정청소 등을 통한 수질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적합 판정시에만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나 채수량이 풍부하고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과 함께 생활용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부족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수원시를 비롯한 25개소에 12억 5천 만원을 투입 설치하였으며
- 2001년도에는 국비·교부세 지원을 받아 17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비 지원을 통한 정부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박기춘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과오부과 및 과오납 미환부금 환부 대책

- 최근 1년간 도 및 일선 시·군에서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2만 1천여건 75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데
-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지방세 과오부과를 최소화 하고 미환부액 환부를 위하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1년간 시·군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부과한 지방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만 1,146건에 74억 93백만원이며
- 발생 유형별로 보면 납세자 착오가 5,390건에 10억 31백만원, 면적착오가 2,076건 5억 65백만원, 세율 및 과표착오가 1,645건 5억 2백만원, 기타가 1만 905건에 47억 22백만원으로서
- 이는 우리도가 최근 1년간 부과한 지방세 건수 2천1백 70건의 0.1%, 부과금액 2조 9,466억원의 0.25%에 해당됩니다.
- 지방세의 과오부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 과세권자의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정업무 상설 지도·점검반을 운영

하여 3년 주기로 전 시·군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세무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업무 연찬을 위한 경기세정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 전국 최초로 수신자 부담 지방세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는 등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에 있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납세 고지서 송달전에 소유물건 확인 철저 등으로 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착오부과의 최소화는 물론, 지방세 홍보 강화를 통하여 납세 의무자의 착오 납부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과오부과금 74억 93백만원 중 납세의무자의 거소불명이나 소액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회피 등으로 미환부된 1억 3,900만원에 대하여
- 우리도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을 과오납금 특별 환부기간으로 정하여 거소불명으로 인해 미환부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 소재를 파악 환부하였고,
- 소액 환부 기피 등으로 인한 미환부액에 대하여는 과오납금 발생 통보 등 안내를 통하여 환부하도록 조치하는 등 현재 일선 시·군에서 과오납금 환부를 위한 자체 계획수립과 및 환부 책임공무원 지정 등 지방세 징수노력과 동일하게 환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오부과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로는 정기종합감사시 양평군과 안산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하여 훈계 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고의성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반복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세무교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짓기·포스터 공모시상시 선정기준과 운영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어린이 세무교실은 지난 4. 13 국회의원 선거시 입후보 등록과정에서 제기된 출마자 재산등록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드높아진 주민의 납세의식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148개교 9,300명(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방법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세무공무원 89명과 도내 소재대학 중 세무학과 대학생 8명 등 107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도가 제작한 “우리도의 세금과 살림살이”라는 만화교재를 활용하여 1일 2시간 이내로 강의교육과 시·군청 민원실,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응답자 7,724명 중 96%가 세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어른이 되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 ▶ 세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나
 - 알게 되었음 : 2, 217명(28.7%)
 -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음 : 5,204명(67.3%)
 - 잘 모르겠음 : 303명(4.3%)
- 이에 도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글짓기, 포스터를 공모한 바 18개 시·군에 816점이 접수되어 우수작 52명을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글짓기·포스터 공모시상에 있어서 작품심사는 예충경기도지부 문인 및 미술협회 작가 6명이 공정하게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지역별로 고르게 시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반면 어린이세무교실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학생들에게 이론적 강의와 세금에 대한 전문용어는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는 15분내의 지방세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만화교재와 병행사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현재 홍보 비디오를 제작 중에 있고

둘째,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4~5학년보다는 6학년생이 월등히 높고, 다중집합교육보다는 반(班)단위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육대상 선정시 세금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6학년 중심의 반(班)단위로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 ▶ 세금에 대한 학년별 이해도
 - 4학년 : 26명(0.5%)
 - 5학년 : 3,290명(42.5%)
 - 6학년 : 4,408명(57.0%)

셋째, 어린이 세무교실 교육내용과 글짓기, 포스터 공모시상에 대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이 좋은 호응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도 교육청·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속운영 해나가겠습니다.

- 또한, 금년도 우수작품은 12월 중 우수작품집으로 1만권을 발간하여 도내 초등학교 824개교 4·5·6학년 9,435개반(班)에 배부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이해와 성실납세의식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2001년도에도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질 의)

재산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도단위 광역홍보 사유와 추진실적

- 도가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도단위 광역홍보 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 100% 징수되어야 하나 실제로 있어서는 전국평균 부과액의 10%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도에서는 부과고지이후 납기내 징수율제고와 자치단체 개별납세안내홍보에 따른 홍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 등 정기분에 한하여 전국 최초로 도단위 광역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상반기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납기내 징수율이 전년동기대비 약 2%정도 제고되었고, 시·군별홍보에 따른 홍보비 부담을 대폭 절감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 재산세·1기분 자동차세·종합토지세 도관역 홍보 전환으로 예산절감 효과 : 17억760만원
 - [

시·군이 도에서 행한 홍보매체를 개별홍보시 비용 : 26억5,360만원
 도 광역홍보비 : 8,560만원
 - ▶ 광역홍보비 납기내 징수율 전년동기 비교

구 분	2000. 7. 31 현재			'99. 7. 31 현재(%)	증감
	부과액(억원)	징수액(억원)	징수율(%)		
재산세	1,531	1,333	87.5	85	2.5% ↑
자동차세	2,428	1,928	82	77	5% ↑

○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6월 정기분 재산세와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3천 7백만원의 홍보비로 지방신문사 11개사에 납세 안내광고, 경인방송에 박찬호 야구경기시 납세안내 자막광고로 1일 5회방영, 경기방송에 대화식광고 1일 5회이상 방송을 하였으며, 도 관계공무원이 경기방송에 출연하여 납세안내에 대한 대담방송을 하였습니다.

▶ 재산세·제1기분 자동차세 광역홍보

- 경인·경기·중부일보 등 지방지 11개사 납세안내 광고 : 29,000천원
 - 경인방송(iTV) 자막 광고 : 5,000천원
 - 1일 5회 박찬호 경기 스포츠 중계시간
 - 경기방송 대화식 광고 : 3,300천원
 - 1일 5회 정규방송 시간(1회방송 80초)
 - 경기방송 인터뷰 : 1회 10분

둘째,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4천 8백만원의 홍보비로 한국, 동아일보 등 중앙지 10개사에 납세안내광고, 경인 및 경기방송에 같이 자막 및 대화식 광고로 하였고, 경기방송에 도관계공무원이 출연하여 납세안내에 대한 대담방송을 실시 하였습니다.

▶ 종합토지세 광역홍보 실적

- 중앙·한국·동아일보 등 중앙지 10개사 납세안내 광고 : 40,000천원
 - 경인방송(iTV) 자막 광고 : 5,000천원
 - 스포츠, 연속극 시간
 - 경기방송 대화식 광고 : 3,300천원
 - 1일 5회 정규방송 시간(1회방송 80초)
 - 경기방송 인터뷰 : 1회 10분

셋째, 오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제1기분 자동차세와 같이 3천 7백만원의 홍보비로 지방지, 경인 및 경기방송에 안내광고 등 실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제2기분 자동차세 광역홍보 : 재산세와 같이 홍보 예정(37,300천원)

- 앞으로 금년도 도단위 광역홍보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정책개발연구용역비 집행

-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총 36건 중 경기개발연구원에는 14건을, 나머지 22건은 타 기관에 발주하였는데,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경우 예산절감과 도 정보에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발주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2년간 발주한 3천만원이상 학술연구용역은 36건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14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14건, 대학 및 연구소 등 기타기관에 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도출연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전반적인 용역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분야별 연구인력 부족과 업무량의 증첩,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재정업무검증용역은 한국조세연구원에, 지역특성화산업대책수립용역은 한국노동연구원에, 해양관련분야 연구용역 등은 한국해양연구소에 업무특성상 전문성과 정부시책으로의 반영이 용이함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발주하였으며,
- 인공어초시설 효과조사와 외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은 업무특성상 관련 특수대학 및 전문민간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은 95년도 발족 이래 그 동안 기구·인력 등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였고 연구분야도 다양화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하여온 바 앞으로는 가급적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각종 용역을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의사당내 종합민원실 이전 관련

- 도 종합민원실이 의사당 1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야간작업이나 업무개발 시 활용공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의 이전대책과
-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사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사는 건축한 지 33년이나 지난 노후건물로서, 그간 도의 기구 및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건물 증축이 따르지 못해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셔서 의사당 1층의 일부 141평을 종합민원실로 사용 해오고 있습니다.
- 도에서는 종합민원실을 하루 속히 이전시키기 위해 신청사 건립과는 별도로 현 청사 정문앞에 민원복지관을 우선 건립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신청사 부지의 이전문제가 새로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시까지의 사무실이 부족한 우리도의 어려운 여건을 널리 이해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 위원님들에 대한 도 관사제공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도에 비어 있는 관사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도의 관사 제공은 가능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원기영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지방세 미납액에 대한 징수 및 불납결손액 처리방안

- 위원님께서서는 '99년 9월말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과대비 80.4% 불과하므로 이에대한 획기적인 징수방안과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불납결손 처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9년 9월말 지방세 부과세액은 총 3조 2천 5백 33억원이고 이중 2조 6천 1백 5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백 86억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이 6천 97억원이었으나
- '99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미수납액이 88억원이 증가하여 총 6천 1백 85억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고
-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 분기 1회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 상습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지속추진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신용불량등록
 - 사실상, 폐차말소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지침시달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지시
 - 체납세 정리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

강력하고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00년 9월 현재까지 이중 802억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액의 284%에 해당하는 채권도 확보하였으며
-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방안으로는
 - 단기적으로는 금년도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체납액 최소화를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 장기적으로는 세목별 체납발생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홍보매체를 이용한 자진납세 풍토조성 등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세 불납결손은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거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야만 결손처분 대상이 되므로 제도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으나
-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라 판단되므로 행정적 지도를 통하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도유지 대부료 증가사유

- 도유재산을 대부받은 주민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데 매년 대부료는 상승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 주민들에게 대부료 상승 사유를 공지할 의향은 없는지와 주거용으로 대부받은 주민에게는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면서
- 주거용 임대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도유재산의 대부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의 조정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만, 주거용 재산의 대부요율은 재산가액의 연간 2.5%로 일반대부요율의 1/2수준이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연간 1%의 대부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도유재산 대부료는 일반 사유재산의 대부요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저소득 서민들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각 시·군에서는 매년 대부료 고지시 산출근거를 통보하고 있으나 대부자들이 보다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선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주거용 토지를 대부받고 있는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에 대하여는 소규모 단독필지를 대부받은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용 임대재산에 대한 자료는 감사기일안에 제출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탈루·은닉되는 세원의 누락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방세가 과세 누락되는 주요 원인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산출해서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고의, 과실로 과소 신고하여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 과세대장을 작성하여 부과 고지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세무공무원이 물건변동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음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과세누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조사 실적에 의하여 이를 분석하면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분류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추징은 전체세액 대비 1%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 과세누락을 과세물건별로 보면 대부분 별장이나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 중과세 대상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반과세 대상으로 납부하기 때문이며 종토세 등의 단순누락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 1999년 : 재산세, 종합토지세 추징세액 1,321백만원
(전체 추징세액 88,599백만원의 1.5%)
 - 2000년 : 재산세, 종합토지세 400백만원
(전체 추징세액 55,525백만원의 0.7%)
- 도에서는 과세누락되는 세원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기간 내 반드시 실시토록 시·군을 독려하는 한편 '99년도부터 골프장, 건설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지방세 제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실납부를 당부하고 있으며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기 전에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Work-Shop을 개최하는 등 지방세 과세누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의)

결손처분 현황 및 채권확보대책

- 위원님께서서는 결손처분 중 무재산이 가장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채권확보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3년간의 결손처분액은 총 1천 2백 82억원으로서 이중 무재산이 7백 80억원으로서 전체 결손액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무재산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었으나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가 지연되어 지방세 부과시점에는 이미 부도·폐업 등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하였거나
- 당초부터 무재산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 및 부동산등에 대한 재산추적을 실시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입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1년에 4회씩 행자부에 의뢰하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와는 별도로 지적과에 설치한 국토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시·군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 중부지방 국세청에도 소득세 관련자료통보가 시·군 세무부서로 조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질 의)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이 낮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현 시가보다 낮아 불성실한 납세자가 가산세 20%를 부담하더라도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축건물 가격에 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물 과세표준액을 도지사에 승인신청하면 도지사가 승인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하여 이를 취·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로 적용하고 있으며, 취·등록세의 경우 납세자가 취득한 건물의 사실상 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거나 납세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거나 법원판결,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표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납세자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가격을 건물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년도 신축건물의 m²당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은 한국감정원(489천원), 주택공사(474천원), 주택은행(516천원)등 3개 기관에서 조사한 99년도 신축가액 평균인 493천원의 31%수준입니다.
- 이와 같이,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현시가의 31%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연차별 현실화 방안을 갖고 기준가액을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만, 건물과표의 급격한 인상은 매년 정기분 재산세 인상을 가져와 조세저항의 우려 때문에 전국적인 형평성과 부동산 경기동향, 주민의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범칙금 징수내역과 금액

- 범칙금의 징수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에 세입이 되는 범칙금인 과태료의 징수내역은 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사료성분 위반과태료 등이며
- 2000년 9월말 현재 3억 2천 6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2억 9천 5백만원으로써 90.5%를 징수하였습니다.
- 행정질서를 위반하여 부과한 범칙금(과태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사무이어서 담당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여 범칙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 의)

세목별 과오납 현황 및 과오부과 내역

- 지방세 과오납 중 세목별 과오납 내역과 공무원 실수로 환부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0년도 10월말 현재 과오납 환부내역은 4만 3,926건에 207억 1천 7백만원이며, 이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 취득세가 2,098건 68억 18백만원, 등록세가 3,798건 61억 18백만원
 - 면허세가 6,464건 1억 4백만원, 공동시설세가 3,191건 5억 99백만원
 - 지역개발세가 186건 66백만원, 주민세가 6,793건 46억 91백만원
 - 재산세가 4,835건 4억 64백만원, 자동차세가 7729건 4억 86백만원
 - 농지세가 27건 1백만원, 종합토지세가 4,793건 8억 71백만원
 - 도시계획세가 3,749건 2억 37백만원, 사업소세가 263건 1억 91백만원입니다.
- 또한 시·군 공무원의 잘못으로 과오부과된 지방세는 최근 1년간 2만 1,146건에 74억 93백만원이며, 이를 발생유형별로 보면 소유자 착오가 5,390건에 10억 31백만원, 면적착오가 2,076건 5억 65백만원, 세율 및 과표착오가 1,645건 5억 2백만원, 기타가 1만 905건에 47억 22백만원입니다.
- 이는 우리도가 최근 1년간 부과한 지방세 건수 2천 1백 70건의 0.1%, 부과금액 2조 9,466억원의 0.25%에 해당됩니다.
- 과오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 세정업무 상설지도반을 운영하여 3년 주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업무 연찬을 위한 경기세정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납세의무자의 과오납 최소화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미래납세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통합홍보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 전국 최초로 수신자 부담 지방세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철저히 과오납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에 있어 과세자료 관리철저는 물론, 납세고지서 송달 전에

소유물권 확인철저 등으로 공무원의 착오부과의 최소화는 물론, 지방세 홍보 강화를 통한 납세자의 착오납부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도유재산 현황 및 매각기준

- 도유토지 현황 중 지목별, 시·군별 내용을 밝혀주시고
- 도유지 매수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유지는 2000. 1. 1현재 6만 3,985필지 3억 4,206만 1천㎡이며, 대지 2,875필지 1,509천㎡, 전·답 1만 9,973필지 1만 3,347㎡, 임야 4,364필지 3억 861만 4천㎡, 기타 3만 6,773필지 1만 8,592㎡이 되겠으며,
- 시·군별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도유지는 현재 처분보다는 활용 및 보전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 매각시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고액입찰자에게 매각되어야 할 것이나,
- 수익계약 매각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서 정한 28가지 요건을 갖춘 자에게 매각됨을 보고드리며, 위 법령사본을 자료제출시 함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순영, 김용운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이순영 위원님께서서는 우리도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장비가 가동이 되는지 등을 말씀하시면서 운영관리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 김용운 위원님께서서는 오산시 등 시·군별 시설수를 말씀하시고 완벽한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염려하시면서, 산고읍과 외곽지역 경보전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도의 민방위 경보시설은 도 통제소 등 410개소에 경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보사이렌 설치기준을 읍이상 도시밀집지역으로 인구 6~8만명당 1대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며 무성앰프는 면사무소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 민방위 경보시스템의 24시간 비상상황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비 소통점검을 매일 6회이상, 정기점검은 매주 1회, 순회점검은 분기별로 1회이상, 예방 정비·점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 경보시설 관리자의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신규 관리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340명에게 운영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경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1년도부터는 경기FM 방송국을 이용한 재해방송과 안정화된 경보시스템을 확보하게 되어 민방위사태시 조기경보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고읍과 도시 변두리지역 난청지역해소를 위하여 경보시설을 유형화(대형+중형+소형)하여 설치함으로써 난청지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영, 진중설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민방위 장비보유현황과 부족한 장비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진중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초동수습과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를 시·군별로 수요를 감안 지역실정에 맞는 장비를 자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통필수장비인 전자메가폰 등은 확보율이 높은 편이나 무전기 등 권장장비는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쌍안경의 경우 지난해까지 권장장비였기 때문에 확보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 이와 같이 장비확보율이 저조한 원인은 평상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점과 시·군의 재정여건, 기관장과 예산부서의 민방위 사태시 대처를 위한 구입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한 점도 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필요한 장비의 기준을 설정 부족한 장비는 예산을 확보구입토록 하겠으며, 비상시 유관기관과 장비활용 공조체제 및 민간장비 활용협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과 신규민방위담당자를 대상으로 119구조대, 장비생산업체와 공동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활용도를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 한영남, 이준영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지방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대책

- 지방재원확보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세인 담배소비세분 교육세이양 등 4개 분야의 세제개편 논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제시된 안을 중심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그 예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교육세의 경우 우리도가 적극적으로 수차에 걸쳐 지방세로 이양을 건의하여 2001년도부터 지방 교육세화를 위하여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 중으로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99년도 결산기준으로 담배소비세분 교육세가 7개 세목에 6천7백25억원이 도 세입이 되어 교육재정으로 전액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세목 및 현황: 등록세 등 7개 세목

등록세액의 20%, 경주마권세액의 5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40%

- 그 밖에 지방세의 세수증대 방안으로 사치성재산 등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등의 조사, 체납액의 강력 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또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켈런에 대하여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지역개발세의 기타용수의 세율인상 및 기타용수를 목욕용수에 편입, 전체 지하수의 구간별 누진세율을 채택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영남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지난해와 금년도에 과세누락된 세원을 발굴한 시·군별 세무조사 실적이 수원, 성남 등 일부 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추정세액이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세무조사시 과세누락 원인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거나 중과대상을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유형이 있으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나 종업원 급여지급과 관련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주민세 납부 등 제반 지방세의 정당납부 여부 확인시 과소신고 되거나 부과 누락된 세금이 있습니다.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등이 세무조사 추정실적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세 법령상 “대도시” 지역으로서 법인의 숫자가 많으며 법인이 본점, 지점에 공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세됨에도 일반과세로 과소신고 납부하는 사례가 있고 지역 특성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 등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1999년 : 수원 4,618백만원, 성남 5,346백만원, 안양 10,568백만원, 고양 6,497백만원(전체 추정세액 88,599백만원의 30.5%)
- 2000년 : 수원 6,022백만원, 성남 4,205백만원, 안양 1,986백만원, 고양 5,533백만원(전체 추정세액 55,525백만원의 31.7%)

(질 의)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액 충당을 위하여 수령한 법원배당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발생한 횡령사례와 조직적인 비리의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세에 충당하여야 할 법원배당금을 수령하여 횡령한 사실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배당금 지급실적에 대한 감사시 발견되었으며, 우리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3개 시·군에서 47건에 2,356만 2천원이 발견되었습니다.
- 횡령액 : 47건 23,562천원
 - 수원시 : 21건 14,570천원('98. 6. 8~'99. 10. 5 기간 중 세무8급 박제천 횡령)
 - 성남시: 4건 2,673천원('99. 3. 16~'99. 7. 7 기간 중 행정8급 최대성 횡령)
 - 안성시: 22건 6,319천원('99. 7. 20~'00. 1. 14 기간 중 행정7급 김상식 횡령)
-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배당금을 횡령할 수 있는 주된 원인은 배당내역이 법원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통보되지 않고 배당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법원배당금은 반드시 예금계좌로 송금 받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배당금 취급지침 [세정13413-10474(2000.3.22)]
- 또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거 부친 세무비리와 같이 공무원이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비리는 우리도에서 금년도 (2. 21~2. 26)에 전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세무공무원과 법무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은행수납 소인을 위조하거나 과

세자료를 조작하는 과거의 세무비리 유형은 세무전산화 추진과 감사 및 점검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근절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로부터 부동산 등기 수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과 수납의뢰를 받은 은행원등 외부인이 등록세로 납부 의뢰한 금액 185건 1억 6,772만 7천원을 법무사 직원과 은행원이 착복한 사실을 적발하여 횡령혐의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횡령금액은 전액환수 조치하였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등록세 수납사항 정리실적을 보고토록 하여 사건이 발생되면 즉시 형사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법원배당금 횡령은 행정자치부에서 배당금을 예금계좌로 수령토록 법제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별점검 기간 : 2000. 2. 21 ~ 2. 26

- 횡령금액 적발 : 185건 167,727천원

- 수원시 56건 85,646천원
- 시흥시 1건 2,769천원
- 군포시 125건 70,488천원
- 김포시 2건 900천원
- 광주군 1건 7,924천원

(질 의)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세목별·과세유형별 내역

- 10월말까지 처리한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52건의 세목별·과세유형별 내역과 이의신청의 각하·취소결정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도의 10월말 현재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건수는 152건으로서 세목별 내역은 이의신청으로 취·등록세 등 도세가 92.1%인 140건이며, 심사청구로·종합토지세·주민세 등 시군세가 7.9%인 12건입니다.
- 또한, 과세유형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세중과가 22.4%인 34건, 대도시내 법인 설립·설치 및 공장신·증설 취·등록세 중과가 17.8%인 27건, 비과세·감면, 취·등록세 추징이 36.2%인 55건, 과점주주·고급오락장 등이

23.6%인 36건으로서 도세인 취득·등록세 중과제도 와 비과세·감면 후에 당초 비과세·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비과세·감면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제민원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의신청의 결정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하 결정』 사례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보다 1일이 초과한 91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리요건이 미비함으로써 본안 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취소 결정』 사례로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과세표준액 적용은 시장·군수에게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과표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에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서 신고 계약금액이 시장·군수에게 검인 받은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액보다 높아 세무서 신고가액을 과표로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 납세자는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고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세무서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어 이를 취소토록 한 경우입니다.

(질 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 금년에 공유재산 유지 관리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그 결과 누락재산 및 개인의 무단점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조사결과 미등재된 누락재산을 보고드리면 도로 편입용지 등 신규등재 4,120필지 무단점유적발 49필지, 유휴재산 186필지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누락사유는 도로편입용지보상 등 용지매수를 하였으나 도로의 준공은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리하지 못한 재산 등입니다.

(질 의)

복식부기 도입 추진상황

- 복식부기제 도입추진 상황과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은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행자부주관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 행자부에서 '99년 4월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회계기준 설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친 후 검증결과를 토대로 복식부기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2003년부터 확산예정
 - ※ 연구용역 (부천, 서울 강남구 공동 발주)
 - 기간 및 사업비 : 1999~2001, 25억 (국비 70%, 지방비 30%)
 - 용역내용 : 회계기준 설정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복식부기 시험운영 및 검증
-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2001년도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복식부기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진 중 설 위 원 (2000년 도 행 정 사 무 감 사 자 치 행 정 위 제 7 호 2000. 11. 29)

(질 의)

신청사 건립관련

- 신청사 건립 계획이 IMF구제금융 여파로 착공이 유보되었으나 국가경제 및 세수가 회복되고 있음으로 사업추진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 기존 계획과 설계대로 청사를 건립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착공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청사신축 계획을 중지하고 새로운 청사부지를 물색하여 이전 신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신청사 건립 문제는 현 청사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와 분산된 건물배치로 인한 불합리한 동선,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95년부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현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코자 '98. 5. 30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 여파로 사업추진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 최근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세수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청사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현 청사 부지에다 착공 하는 것은 4·5년에 걸치는 공사기간 중 소음과 분진 등 사무환경이 크게 저해되고 주차난 심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행정기관 청사건립추세가 고층화되면서 관리 운영 체계도 중앙집중식전자시스템화 되고 있으며, 광장 및 저층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의 휴식공간, 문화정보 공간, 도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고층부는 업무공간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토록하고 있으나, 우리도의 현 청사부지는 군용항공기지법 등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부득이 하게 저층 설계되어 신축건물과 제2별관, 의사당간의 동선이 길어지고, 전시관, 체육시설, 도역사관, 시군 홍보관, 세미나실등 제반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타지역으로의 청사부지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검증이 이루어지고 의회의 동의 등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국·공유지 임대자격 등

- 국·공유지의 임대자격과 대부료의 책정기준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안산시의 2000년도 대부료가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 군포시 부곡동 중앙개발의 경우 계약기간 5년에 월대부료 69만 3천원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계약의 경위와 절차는 무엇인지와 계약에 흠이 없다면 현재의 임대료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는바 이에대한 대책과
- 국유지 대부료 채납액이 24%에 이르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국·공유지의 대부기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며 법령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2000년도의 안산시 대부료가 없는 사유는 선감동 일원의 경작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으로 농지소득금액이 결정된 후 부과 고지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 중앙개발 골프장을 비롯한 모든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의거 시장·군수가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고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시거나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등 지가의 공식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15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지와 원형보존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전면적을 동일하게 조사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는 시장·군수가 관할구역내 모든 토지를 형평성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현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고 시·군별 지목별로 차이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도의 경우 평균 약 70%정도의 현실화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나 보전임지 등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수익성이 없거나 낮은 토지는 지가현실화율이 50%에도 못미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골프장의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대부면적×㎡당 공시지가에 대부요율인 5%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공시지가에 따라 대부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국유지의 대부료 체납문제는 독촉장발부 등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와 금년도 9월말까지의 세무조사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건수가 16,562건이었으나 금년도 9월말까지는 6,318건에 불과한 것은 세무조사는 대부분 법인의 결산이 끝나는 4월 이후부터 이루어져 9월말까지는 실질적인 6개월 동안의 실적으로 앞으로 남은 12월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어 금년도에도 약 1만건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되나
- 그래도 지난해보다 6천건 정도가 적은 것은 9월까지의 실적은 법인에 대한 실적만 집계한 것이고 연말까지의 실적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비과세 대상이나 사치성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종합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 향후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도 월별도 구분하여 보고 받음으로써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 의)

기업체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 위원님께서서는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1,140억원에 이르고 있어 세수 목표 달성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8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서에 의하면 우리도내 총기업체수는 425천개로서 이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체는 18,804개로서 전체기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체납액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64,885백만원(56%)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민세가 13,091백만원(11.4%), 종합토지세 12,371백만원(10.8%)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요체납사유로는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하거나 세무서로부터 국세부가분 주민세 자료 지연 통보로 부과징수시기를 일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체납기업체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122%에 해당하는 139,906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 체납세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 ▶ 체납법인 전체를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으로 구분하여
 - 징수가능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강화,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권조회 등을 실시하고 무재산이 입증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확행하되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지방세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사유와 담당공무원의 문책은?

- 금년도 10월말 현재 행정소송 44건중 패소율이 38.6%에 이르고 있는데 패소율이 높은 사유와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10월말 현재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된 지방세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사건은 44건으로서 이중 61.4%인 27건이 승소하였고, 38.6%인 17건이 패소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이 승소한 27건의 내역은 취득세 18건, 등록세 4건, 종합토지세 5건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정당과세 인정 9건, 대도시내 공장신설 2건 등이며, 과세관청이 패소한 사건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정당한 사유” 인정 7건, 과점주주 2건, 과표적용, 가산세 부과 등 10건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율이 많은 주된 이유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많은 질의회신 사례와 법원 판례와도 불구하고 실제 세법적용의 경우 “법인이 당해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지방세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인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세법운영상의 문제점과 법원 패소사례는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실시와 관련법규의 개정건의를 통하여 지방세 행정소송 최소화 및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 남한산성 주변 군부대의 대인지뢰 매설 및 유실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성남시에 문의한 바 시로서는 군부대 협조공문 등을 발송한 바 있으나, 시 자체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 군부대에 문의한 바 공군 제8987부대 대공포대를 방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취한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합참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나 상세한 사항은 군사보안사항으로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수해·산불 등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원, 관·군 연락체계 및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산불·수해 등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저희 도에서는 군부대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부서에서도 민방위대 동원의 원활함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시 수방, 방호, 복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도 민방위계획 수립시 교통사고, 수질오염, 산불 등 분야별로 공무원 및 군부대를 총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내 74,984개망의 주민신고망 운영함으로써 재난발생을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재난상황실 및 군부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안전관리에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종설, 김영근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 및 사고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전체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6,483명으로 도 및 직속기관에 544명, 시·군에 5,9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소속복무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병무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년 한해 사고발생내역은 복무이탈 283명, 절도 및 형사범죄 54명, 교통사고 10명 등 총 35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고발 274명, 구속 73명 등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공익요원은 비밀취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어 업무상의 비밀누설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보충역 처분된자 중 학력미달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복무감독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예금부분보장제 도입에 따른 손실예방 대책

○ 내년도부터 예금 부분보장제가 도입되어 자치단체도 5천만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예금 부분보장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파산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을 근본적으로 막아
- 모든 금융기관을 예금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우량 금융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혁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개인 및 법인은 모두 해당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법인이어서 예금 부분보장제가 적용됩니다.
- 현 시점에서 자치단체만 예외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내부적으로 보험제도, 자금 분산예치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파산하지 않을 우량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나, 우리 도의 금고은행인 농협과 한미은행은 재무구조가 좋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이며,
- 특히, 도 자금의 64.8%(1조6,735억)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의 경우는 수신규모가 약 61조이며, 정부청사,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178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초우량 금융기관이어서 파산으로 인한 도 자금의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고은행의 경영상태 등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고약정 체결시 안정성 평가항목의 제출을 명문화하여 금고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 의)

- '99년도 및 2000년도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가평군, 광주군, 성남시의 지적건수 또는 추정세액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시군 세정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평군은 건수와 추정세액이, 광주군은 건수가, 성남시는 추정세액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 가평군('99. 7. 5~ 7. 10) : 1,142건 522,683천원
 - 광주군('00. 4. 17~ 4. 22) : 808건 134,626천원
 - 성남시('00.10. 9~10. 21) : 118건 359,808천원
-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실시한 가평군은 보전임지내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 중 시업림(施業林)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80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지적되었는데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교육세 추정건수도 합하니깐 760건으로 다른 시군 보다 상대적으로 지적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추정세액이 많은 것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10건에 4억 2,728만 2천원이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 금년도에 실시한 광주군의 경우는 관내 거주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종합토지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에도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누락 건수 725건이 지적되었으며, 성남시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과 대형쇼핑점에 대한 재산세 누락 등으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은 추정세액이 나왔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이와 같이 지적되는 사례의 재발을 방지코자 세무지도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 시·군에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사례 재 지적 시군 관리자와 담당자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세 과세누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질 의)

경기세정포럼 운영

- 경기세정포럼의 운영내용과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세정 포럼은 지방세제의 이론정립과 정책기획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21세기 경기세정을 주도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99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총 31회에 3천 3백명이 참석함으로써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 금년도 세정포럼 내용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군 세무공무원 199명이 희망하여 연인원 1,407명이 참석하였고 109명은 수료자로 최종 확정되어 전문교육과정 훈련성적을 인정하였으며
둘째, 조세전문가 17명, 대학교수 14명, 행정자치부 등 정책입안자 11명 등 42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2000년도 지방세정운영방향, 회사정리 절차와 지방세해설, 외국의 지방세제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셋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방안, 지방세 고지서송달개선 및 홍보방안 등의 10개 분야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발표를 실시하여 우수연구자 6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기세정포럼운영결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포럼의 내실화와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도에는 도·시·군 세무공무원 중 80명을 선발하여 과제연구 및 국세 등 세정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 기회로 운영함과 동시에 포럼참여자에 대하여는 전국지방세정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우수연구자에게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경기세정포럼이 명실상부한 지방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실이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질 의)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재검용 “국민방독면” 보급 사업이 업체와의 유착으로 졸속 처리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 방독면의 성능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산소농도 18%이하인 곳에서 사용할 때 생명에 위험여부와 우리도의 2000년 보급계획은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급하고 있는 방독면은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명보호에 가장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 그러나, 남북화해 분위기 등 주변안보환경 변화로 주민들의 방독면 구입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유사시는 물론 화재 발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을 행정자치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 화재검용 방독면 이 업체와의 유착으로 졸속처리 되었고, 가격도 현재 보급하고 있는 일반 방독면보다 2~3배 비싼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화재검용 방독면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쟁용 독가스의 정화기능을 보장하였고,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방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재료비 등을 고려할 때 조달가격은 3만원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독면 보급 목표량 대비 미확보 수량은 향후 2단계 보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올해 방독면 구입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판단하여, 일반 방독면의 구입을 원하는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달 구입하고 있고, 다용도 방독면 구입 예정인 시·군은 조달결정여부가 확정되는 12월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산소농도 18%이하인 곳에서 사용시 생명에 위험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소농도 18%이하인 곳에서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개발된 사례가 없고 방독면 착용 유무를 떠나 산소농도 10%이하에서는 질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현행 개발한 다용도 방독면은 스치로폴, 플라스틱, 화학섬유가 탈 때 많이 발생하는 히안화수소로부터 방호가 가능하고, 일부열에 안면부를 보호할 수 있어 현재 시판되고 있는 화재대피용 마스크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질 의)

용역집행 현황

- 진목리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업체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에서 A지구와 B지구에서 항공방제를 몇 회 실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촬영을 몇회 실시를 하였는지와
- 아울러 제2별관 청소용역과 제2별관및구관청소용역을 2중으로 주었는지에 대해 물으시고
- 노래하는분수대 기본설계 용역비 7,943만원을 들여 어려운 시기에 분수대를 만드는데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진목리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3,567만원으로서 산출근거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도내로 지역을 제한하여 일반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개발제한구역 및 항공사진촬영에 대하여는 항공방제가 지역별로 2회 내지 3회를 실시하였고 항공사진촬영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 제2별관 청소용역은 '98년 당시 제2별관만 실시하였으나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청소용역인부가 감소됨에 따라 구관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을 추가한 것으로 2중으로 발주된 것은 아닙니다.
-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용역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서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우리도가 관광 중심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유희시설 부지내에 스페인 까탈루냐주의 세계적인 관광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를 설치하여 내·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정중운, 김용운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 도본청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 4월까지 설치된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와 앞으로의 시설관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이 1997. 4. 10 제정되어 2000. 4월까지 동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도 본청 건물은 대부분 건립된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19개동으로 분산 건축되어 장애인이 아니 사람도 방문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 동안 현재의 건물배치 상태에서 법적 설치조건 이상의 시설로 설치하고자 전문가 및 이용주체인 관내 장애인 단체 등의 사전 자문을 받아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에도 시민추진단의 점검을 받아 일부 미비점을 추가보완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주차장 16면, 장애인용 리프트 1개소, 장애인화장실 7면, 건물의 주 출입구 등에 점자블럭 199.8m, 안내축지도 14개소, 벽면점자판 1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그외에 기존 제2별관 승강기의 점자조작반 보완과 건물출입구등의 경사로, 호출벨을 설치하였습니다.
- 건물구조상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기 설치된 편의시설을 잘 관리하여 이용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김종식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횟수와 시·군의 탈루·은닉 세원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시·군 세정업무지도점검은 세무비리를 예방하고 법령 및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세무행정을 발전시키고자 세정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상설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용인시 등 10개 시·군을 점검하여 과세 누락된 13억 9,677만 4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오산시 등 11개 시·군을 점검하여 13억 1,435만 3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 감사관실 감사실적 : 8개 시군 1,437백만원 추징
-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나 별장 등 사치성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 중과세 대상물건을 취득하고 일반과세로 납부한 유형이었고 사실상 종교시설이나 공공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비과세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과 업무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세원 탈루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전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발전 지향적인 세정운동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질 의)

세정업무관련 감사시 지적사항

- 각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 관련 수시감사 및 정기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의 공평과세 여부와 세무비리 개연성 유무 및 탈루·은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광명시 등 8개 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인원부족, 기타법리착오해석 등 지적사항은 60건으로 1,437백만원을 추징조치하였으며 그 외에 행정소송비용 미회수금 1건에 대하여 17백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로는 업무방치 등에 따른 경징계 9명, 훈계 97명 등 총 106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질 의)

채납물건에 대한 공매의뢰현황 및 문제점

- 위원님께서서는 채납액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공매건수와, 수수료 요율과 공매로 인한 무리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0년 9월 현재 우리도 전체에서 채납액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공매건수는 3,311건이고 이중 완료분이 552건, 공매진행 중 1,553건이며 공매가 완료가 된다 하여도 압류후 순위 등으로 배당금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매를 중지한 것이 1,206건입니다.
- 압류물건 공매의뢰시 물건 소유자에게 공매의뢰 예고를 통보하여 채납자가 분납 등의 의사를 제시할 경우에는 공매의뢰는 취소하고 있으므로 공매에 따른 무리는 없다고 사료되오며
-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한 금액,
 - 채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또한 시장·군수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금액의 1천분의 5를 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수수료 납부자는 당해 물건 소유자임(공매처분비에서 지급)

(질 의)

2001년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서의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통합고지와 관련하여

-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국세청과 공조체제 유지 방안으로서 2001년 5월부터 도입 · 시행되는 세무서의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통합고지 제도가 납세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지와 향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먼저 2001년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서의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통합고지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현재까지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한 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인 5월 31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징수하여 시 · 군에 배분토록 1997년 1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1999년 12월 2001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 이와 같은 소득할주민세의 부과징수절차 개선으로
 -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납세불편을 덜게 됨은 물론 소득할 주민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누락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징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소득세 납부 후 소득할주민세는 체납하는 예를 줄이는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향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면 곧바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지방세 결손처분역제 및 징수방안

- 2000년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5,137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를 징수하기 위한 민간 위탁방안 강구 등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며
- 불납결손액이 45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추진이 부진한 것이 아닌지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소홀한데 이보다는 업무추진에 따른 고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0년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1천 9백 34억원, 시군세가 3천 2백 3억원 등 총 5,137억원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부여, 형사고발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 민간위탁방안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오며
- 지방세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불, 체납처분 종결, 시효소멸 등 요건이 성립되어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결손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 발생즉시 채권을 확보하여 결손처분대상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고가점수 부여는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앞으로 권고하겠으며 우리 도에서도 매년 2회에 걸쳐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지방세 부과시 행정자치부전산망 활용 용의 등

- 지방세 부과시 행정자치부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와
-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우편법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지방세 부과에 있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이나 직접 송달에 따른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와 잦은 주소지 변경 및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일선 세무조직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등기 우편에 의한 반송률이 높아지고 직접 송달이 어려워 고지서의 적기 송달 문제가 세정업무의 현안사항으로
-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있어 지방세의 징수권이 5년인데 반하여 우편법상의 등기 배달증명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 이상이 경과된 지방세에 대한 고지 송달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때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편법 개정을 통하여 등기배달 증명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화장실 환경개선관련

- 화장실 환경개선도 좋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2개소에 대한 화장실 환경개선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청사는 지은지 33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사무공간뿐 아니라 화장실도 노후되고 매우 협소하여 사용하는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고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내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도 본청 화장실 전체 77개소에 음향설비 및 신문보관함과 화분 등을 설치하였고, 사용빈도가 높은 42개 화장실에는 내부 도색 및 천장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 화장실 관리는 청내 환경미화원이 청소관리하고 있으며 세부개선내용은 별첨자료

와 같습니다.

(질 의)

- 비상급수시설관리와 유지관리예산이 시·군간 형평성이 맞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상급수시설의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예산은 시·군에서 식수대 등 편익시설설치, 간판도색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 추진하는 관계로 시·군 실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근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이 14만 5천건에 842억원에 이르고 있어 조세행정에 불신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 2000년 상반기 현재 과오납금 중 미환부된 6억 6천만원에 대한 환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먼저, 최근 3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145천건 842억원에 대한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 과세자료 관리 소홀 및 세율적용 착오 등으로 인한 과세 권자의 과실이 전체 금액의 32.5%인 51천건 274억원,
 - 착오 납부 및 이중 납부 등 납세자의 과실이 전체 금액의 37.7%인 55천건 312억원,

- 국세인 소득세 등의 경정으로 인한 환부가 전체 금액의 13.0% 인 10천건 110억원이며,
 -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간 과실이 복합적인 기타 사유로 17.5%인 30천건에 14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은 공평·신뢰 세무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납세고지서 송달전에 소유물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으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고
 - 아울러 지방세 홍보 강화를 통한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미환부된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대책을 말씀드리면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나, 과세관청의 통보에 의하여 환부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과오납의 환부도 지방세의 징수노력과 동일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환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납세의무자의 거소 불명이나 소액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 회피 등으로 2000년 6월 말 현재 과오납금 842억원의 0.8%인 6.6억원이 미환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이에 대한 환부대책으로 2000년 9월과 10월을 과오납금 특별환부 기간으로 정하여
- 거소불명으로 미환부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 소재를 파악하여 환부하고,
 - 소액 과오납금으로 인한 미환부액에 대하여는 과오납 발생 통보 및 환부 안내를 통하여 환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과오납금 환부와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미환부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골프장 체납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실태

【 전 국 】

1.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계		2000년도 6월말		1999년도		1998년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739,143	442.199	150,483	97,388	318,162	167,348	324,498	177,463

2. 발생 원인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00년 6월말		1999년도		1998년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93,143	442,199	150,483	97,388	318,162	167,348	324,498	177,463
착오부과	164,681 (20.7)	79,437 (18.0)	38,640	19,351	61,843	24,980	64,229	35,106
착오납부	400,454 (50.5)	187,585 (42.4)	78,670	51,150	159,231	67,480	162,553	68,955
국세경정	65,391 (8.2)	61,624 (13.9)	12,687	14,633	26,681	25,029	26,023	21,962
기 타	162,617 (20.6)	113,553 (25.7)	20,486	12,254	70,407	49,859	71,693	51,440

3. 세목별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기 타
건 수	793,143 (100%)	48,989 (6.2)	63,482 (8.0)	148,620 (18.7)	109,419 (13.8)	103,676 (13.1)	318,957 (40.2)
금 액	442,199 (100%)	177,379 (40.1)	89,417 (20.2)	105,344 (23.8)	8,102 (1.8)	38,796 (8.8)	23,161 (5.3)

【 경기도 】

1.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계		2000년 6월말		1999년도		1998년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45,377	84,177	36,186	12,775	54,794	34,092	54,397	37,310

2. 발생 원인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00년도 6월말		1999년도		1998년도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5,377 (100%)	84,177 (100%)	36,186	12,775	54,794	34,092	324,498	37,310
착오부과	50,753 (34.9)	27,432 (32.6)	19,659	2,990	16,302	9,110	14,792	15,332
착오납부	55,413 (38.1)	31,235 (37.1)	9,385	4,365	22,253	11,302	23,775	15,568
국세경정	9,605 (6.6)	10,960 (13.0)	2,312	2,638	4,062	5,476	3,232	2,846
기 타	29,606 (20.4)	14,560 (17.3)	4,830	2,782	12,177	8,204	12,599	3,564

3. 세목별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기 타
건 수	145,377 (100%)	8,569 (5.9)	12,176 (8.4)	16,843 (11.6)	20,223 (13.9)	19,666 (13.5)	22,134 (15.2)	45,766 (31.5)
금 액	84,177 (100%)	32,339 (38.4)	19,496 (23.2)	2,262 (2.7)	16,718 (19.9)	1,946 (2.3)	6,490 (7.7)	4,926 (5.8)

(질 의)

이자적용 방법과 제일은행 예치자금 관리계획

- 도와 시·군금고의 이율,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의 상품선택방법, 상품별 이자율과 예치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면서
- 도 금고에서 퇴출된 제일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언제까지 관리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예치상품의 선택은 잉여자금이 발생되면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자금담당 실무자가 당일 금고은행으로부터 통보되는 수신상품의 금리 및 조건 등을 비교 검토한 후에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신상품별로 금리 및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입시점과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져, 도와 시·군, 그리고 상품별로 금리가 서로 높고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제일은행에 예치된 573억원은 이율이 높아 만기를 연장하여 현재까지 예치한 것으로, 우리 도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손실이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고은행으로 이관하거나 세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일은행에 예치 자금현황

- 2년정기예금('97. 2. 27) : 500억원(이율 10.5%, 연장 7.5%, 월지급식)
- 특정금전신탁 : 73억원(이자 만기시 지급)
- '98. 2. 18가입 23억원 : (17.37%), '98. 3. 3가입 50억원 : 13.86%

(질 의)

국·공유지 대부

- 국·공유지 점용허가 연도별 체납액이 '99년대비 2000년도 국유지는 3배, 도유지는 4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법인, 개인별 체납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 국·공유지 대부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차이가 있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것 중 허가갱신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와 연도별 대부면적이 증가하였는데도 대부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현재 대부받은 국·공유지가 대부분 전·답으로 경작용의 대부료는 수확 후 대부료를 산정함에 따라 미수납된 것이며,
- 대부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 1년~50년까지 대부 할 수 있으나, 대부자의 신청에 따라 대부계약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5%를 기준으로 하나 대부목적 및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부료는 지방재정법령상 최저대부요율이 연간 1%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그리고 경작용재산이 이에 해당되고 주거용재산은 연간 2.5%, 공무원 후생복지용 재산은 연간 4%, 기타 재산은 연간 5%가 되겠습니다.
- 대부기간 만료후 대부갱신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를 확행하고 있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법인, 개인별 체납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 의)

- 지역예비군 자원관리 전산망구축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도에서는 국가총력전에 대비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지역예비군 자원관리 현대화를 위하여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 전산자료통합관리 서버구입비로 9,810천원을
 - 예비군중대 모뎀구입비로 21,447천원을
 - 전산망관리 및 운영비로 20,743천원을 계상지원하였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예비군 편성자원의 신속한 일일결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지역예비군 자원관리의 현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이준영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 제7호 2000. 11. 29)

(질 의)

- 세무조사의 오·남용시 시장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무조사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절차 및 세무조사결과 추정한 세액의 미수액과 결손액의 현황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 변)

- 세무조사는 도내 2만 6천여개 법인에 대하여 2~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법은 전체법인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법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규모가 적거나 지방세 납부실적이 성실한 법인은 가급적 서면으로 조사(약 80%)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세무조사 결과 추정한 세액과 미수액은 현재 우리도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체납현황을 갖고있지 않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중 시·군에 현황 파악 공문을 발송하여 현황이 취합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물품구매 수의계약 지양

- 물품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99년도보다 0.7% 증가한 것은 특정인의 특혜소지가 있으니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물품구매에 대한 운용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수의계약이더라도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물품구입시 구매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모든 계약 건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운영해 나가되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공개입찰에 버금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겠습니다.
- 그리고 '98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의계약 업체별, 내역별, 유형별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민방위대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예산 중 교육비와 장비구입비는 감소하였으나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와 운영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0년 민방위 교육운영 예산이 '99년보다 4,700여 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안산시 민

방위 전용교육장이 2000년 9월 준공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 2,700만원을 비롯하여 청소용품, 상하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 확보에 따른 예산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 아울러 교육운영비 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세이콤 유지비, 교육장, 화장실 청소비품 등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차원의 비용입니다.